

의안번호	제 325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유상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유상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  
발 의 자 : 유상용·김현문·이정범  
박병천·박용규·박재주  
이유희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주체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‘교육감’에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규정된 관리감독기관 주체인 ‘교육장’으로 변경하여, 지역 교육청 관할 시설 현황에 맞는 원활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. 또한,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책무의 내용을 변경함. (안 제3조)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‘교육감’에서 ‘교육장’으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)
- 다.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. (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)

라.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각 사업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

##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안전한”을 “안전한”으로,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”을 “교육지원청의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 중 “하며, 교육지원청”을 “하며,”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략)
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하며, 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
사업의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( 약칭: 어린이놀이시설법 )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5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
가. 교육장: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

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: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·감독 등)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·점검 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계획의 내용, 지도·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(이하 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08. 12. 19., 2011. 5. 30., 2020. 12. 22.>

1.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·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#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구축 비용,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 점검 및 QR코드 제작 설치비
-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비용

## 3.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제2항의제8호  
<신설> 8.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의 전제  
가. 대상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충청북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

### 나. 전제

- 1)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은 시스템 설치비, 전수조사 및 QR코드 설치비, 연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, 현장방문 지도·점검비로 구분해서 산출함

※ 시스템설치비 및 QR코드 설치비는 최초 설치시에만 발생

- 2)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3) 구축기간은 2024년 1년으로 가정
- 4) 지출은 시스템구축 이후 유지비용으로 계속 발생

다. 비용추계의 결과

- 1) 시스템 구축비: 242,000천원
  - 본청(1) : 22,000천원 × 1개 = 22,000천원
  - 지원청(10) : 22,000천원 × 10개 = 220,000천원
- 2) 학교, 유치원,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 및 QR코드 제작, 부착
  - 77천원 × 598개소 = 46,046천원
- 3) 시스템 연간 사용료: 132,000원
  - 본청(1) : 12,000천원 × 1개 = 12,000천원
  - 지원청(10) : 12,000천원 × 10개 = 120,000천원
- 4) 현장 방문 지도·점검(1년에 2회)
  - 88천원 × 598개소 × 2회 = 105,248천원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합계
		-	-	-	-	-
세입	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
세출	시스템 구축· 운영	설치비	242,000			242,000
		QR코드설치비	46,046			46,046
		시스템유지관리비	132,000	132,000	132,000	396,000
		현장방문 지도점검	105,248	105,248	105,248	315,744
		소계				
	소계(b)		525,294	237,248	237,248	999,790
□ 총 비용(b-a)			525,294	237,248	237,248	999,790